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민병덕

박희승 • 이성윤 • 박해철

박 정・김정호・송옥주

민형배 • 서영교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 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 방문보육"이라고 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어린이집,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양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가정방문보육"이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을 말한다.
- 7. "가정방문보육교사"란 영유아의 가정에서 개별보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 "보육"을 "보육(제2조제6호에 따른 가정방문보육을 포함하다)"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어린이집이나"를 "어린이집이나 가정방문보육 또는"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대체교사를 포함한다"를 "가정방문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장에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 ①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3항,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육교사"는 "가정방문보육교사"로 본다.

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임면·배치, 그 밖에 가정방문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정방문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	2
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u>어린이집 및</u>	<u>어린이집, 가</u>
<u>가정양육</u> 지원에 관한 사회복	<u>정방문보육 및 가정양육</u>
지서비스를 말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가정방문보육"이란 보육교
	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
	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을 말
	<u>한다.</u>
<u><신 설></u>	7. "가정방문보육교사"란 영유
	아의 가정에서 개별보육을 실
	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	제34조(무상보육) ①
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u>보</u>	<u>보</u>
<u>육</u> 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육(제2조제6호에 따른 가정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보육을 포함한다)
다.	

② ~ ⑧ (생 략)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어린이집이나</u>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
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u>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 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 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u>지원할</u>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 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 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 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u>어린이집이나</u>
가정방문보육 또는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지원하
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가정방문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신 설>

제50조(경력의 인정) ①·② (생략)

<신 설>

-----.

제49조의4(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 ① 가정방문보육교사 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2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보육교사"는 "가정방문보육교사"로 본다.

- 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임면· 배치, 그 밖에 가정방문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경력의 인정)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가정방문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